

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580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12월 19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영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15번 「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안의 개정조문 중 일부는 위법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. 이에 발의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할 것을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 이유

-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여 법령체계 법령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법령 상호 간 규범 구조와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발의된 안건에 반영되지 않은 타법 개정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의 법령체계를 따르도록 수정함(제5조).
- 나.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아 「지방자치법」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(제12조, 제13조, 제14조).
- 다. 타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함(제9조).

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대혈기증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제대혈기증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5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
제5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기증동의서등”을 “기증동의서 등”으로, “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령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제2호나목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”를 각각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”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제대혈 기증에 관한 동의) ① 제대혈은 행의 장은 기증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,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③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 <p>제9조(비용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가목,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주소지(1년 이상 거주한 자)를 두고, 이 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</p> <p>다. ~ 마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, 가목,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</p>	<p>제5조(제대혈 기증에 관한 동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제대혈기증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제대혈기증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</p> <p>④ ----- 기증동의서 등----- ----- 보건복지부령-----.</p> <p>제9조(비용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-----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

다.

1. (생략)

2. 시 외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(생략)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

다.·라. (생략)

3. (생략)

제12조(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
수탁자는 제대혈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대혈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대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
3. 제대혈 관련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항
4.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5.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
6.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은 관계공무원(보건복지부 및 시 보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)과 제대혈은행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-----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의료계 관계자·소비자단체 대표·그 밖에 제대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제대혈은행의 료관리자가 한다.

제15조 (생략)

제16조 (생략)

<삭제>

제12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

제13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